

##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**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 13명
2. 사회산업위원회 13명
3. 도시위원회 14명
4. 의회운영위원회 12명

**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**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
  -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
(총무, 재무, 세무1·2, 지적, 시민, 민방)
2. 사회산업위원회
  - 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
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위생, 지역경제)
  - 나. 남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도시위원회
  - 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
(도시정비, 지역교통, 토지관리, 건축, 건설)
4. 의회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 
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  
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  
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 
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  
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1인을 둔다.  
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  
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  
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 
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 
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 
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 
둔다.  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 
본회의에 보고한다.  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 
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 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  
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1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2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